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정 취소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0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지정 취소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안 제13조제2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8.

다. 회 부 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지정 취소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 지정취소 등(§13) - (생략) (제1항) - <신설> - (생략) (제2항 및 제3항)	○ 지정취소 등(§13) - (현행과 같음) - 지정 취소 기관은 2년 이내 재지정 금지 (제2항) - (현행과 같음) (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경제교육센터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교육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경제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위탁운영 현황]

지 역	위탁기관('24~'26년)	지 역	위탁기관('24~'26년)
서 울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부 산	(재)부산연구원
대 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 천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광 주	(재)광주연구원	대 전	(재)대전연구원
울 산	(재)울산연구원	경 기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강 원	(재)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충 북	(재)충북연구원
충 남	(재)충남경제진흥원	전 북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 남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 북	경북전문대학교
경 남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세 종	(재)세종연구원		

자료: 재정경제부

현행법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명시적 제재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통상 3년을 주기로 정기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임.¹⁾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재지정 금지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할 경우 지정 첫해에 지정 취소된 센터가 차기 공모에 재응모가 가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2027년 3월에 지정된 기관이 그해 9월에 지정 취소될 경우 2029년 9월부터 재지정이 가능하게 되는바, 2030년 3월에 있을 정기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임.

1)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지역교육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사업 유효기간을 3년으로 운영 중임.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지정 금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교육센터 등에 대한 지정취소의 근거를 두면서 재지정 금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는 제한적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취소 후 재인증 금지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²⁾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생략)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 을 수 없다.</u>
<u>②·③</u> (생략)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